



발행 : 2010 년 7 월

한국 IPG 사무국 (JETRO 서울센터)

한국 IPG Information

한국 IPG 의 활동

목차

< 한국 IPG 활동 >

- 한국특허청 워크숍에서의 강연 1p
- 워크숍 보고
YKK 박진우 씨 2p
- 이용바랍니다 2p
- 한국 IPG 리더 교체 3p
- 한국라이선스세미나 보고 4p

< IP 를 알자 >

- 한국 I P 뉴스 5p
- 최근 판례 6p
- 한국보도 → 일본어 번역
(부산에서 역대 최대규모의 불법음반
(약 42 만점) 적발) 7p
- 「신·지재 최전선은 지금」
(가장 빠른 한국특허 취득법은?) 8p

● 『지재권보호담당 사법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능력강화 워크숍』에서 한국 IPG 리더가 강연을 펼쳤습니다.

한국 경찰 등 수사관을 대상으로 지식재산보호의 중요성을 전하고 가짜 상품 식별방법 등을 가르쳐주는 워크숍이 개최되어, 한국 IPG에서는 일본기업을 대표해 리더인 사사키 요시히로(佐々木 慶弘)씨(S J C 지적재산위원장/YKK 코리아)에게 참가를 의뢰해 일본기업의 모방품 피해 실태 등에 대한 강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연내용은 2 페이지에 게재)

개최일 : 7 월 7 일 (수) ~
7 월 1 일 (금) , 3 일간

장소 : 제주시 회천동
한화리조트

참가자 : 경찰청소속 지능범죄 ·
사이버 · 외사수사관 약 80 여명,
해양경찰청소속외사수사관 약
20 명, 특허청산업재산보호팀 특별
사법경찰발령예정자 16 명(총 116
명)



목적 : 지적재산권보호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특허청의 특별사법경찰권 발령자를 포함)의 업무수행시 필요한 식별요령 및 수사기법에 대한 지식습득, 위조상품 단속업무에서 조직간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확립하여 단속 효율성을 향상시킴.

한국 IPG 사무국

일본무역진흥기구 (제트로)
서울센터 · 지적재산팀
전화 /02-3210-0195
e-mail /jetroiprseoul@gmail.com

榎本吉孝 (에노모토·요시타카)
曹恩実 (조은실)
趙乾東 (조건동)
池崎麻理絵 (이케자키·마리에)

한국 IPG 회원 등록

www.jetro-ipr.or.kr/admin/files/IPG_mem.pdf

사무국소식

한국 IPG 창설에 힘써주셨던 사사키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 1 회세미나에서 사사키 리더는 「모방품대책은 소비자보호로서 의연한 자세로 임해야 할 기업책임이다. 모방품대책의 목인·방치는 범죄의 공범자며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부임지인 다이렌에서도 한국의 활동에 힘있고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새로운 리더 아래 회원확대와 체제내실화를 추진해 초대 리더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한국 IPG ·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 · 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으로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지적재산보호담당 사법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능력강화 워크숍」 에서 일본기업들의 피해를 호소 / YKK 박진우 씨

8 월부터 시행된 특허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해 ‘지적재산권보호담당 사법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능력강화 워크숍’이 7 월 8 일,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특허청 · 경찰청 직원 약 60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일본계 기업 대표로서 SJC 지적재산위원회 위원장(YKK 코리아(주)대표이사)인 사사키 요시히로(佐々木 慶弘)씨가 강연을 펼쳤다.

한국 일본계 기업제품 피해에 대해, 피해제품은 전자기기, 시계, 화장품, 완구류, 식품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모방품의 주요 제조지역인 중국으로부터는 지리적인 이유도 있어 엄청난 수의 모방품이 인천 · 부산항을 거쳐 국내로 반입되고 있는 실태, 이러한 모방품은 한국 내에서 유통될 뿐만 아니라 구미나 일본으로 재수출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촉구했다.

또한 YKK 제품을 예로 들어 YKK 의 지퍼는 유통되는 상품의 부속품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작은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 일본 당국은 철저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거듭 한국정부 기관의 단속강화를 요청했다.

세관에서의 통관보류대책도 포함한 모방품 단속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기관직원의 단속만으로는 업무량, 효과, 또 진위판정 방식이나 취급 등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각 기업으로부터 조사한 모방품 제조업자 블랙리스트를 세관 등 관계행정 기관에 제공하고 그 리스트를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사사키씨는 한국은 기술과 문화 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어내 이제는 지적재산권침해국가에서 지적재산권보호국가로 탈바꿈했다고 말하면서, 한국이 자신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도 동시에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계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그룹인 한국 IPG 에 관한 조직설명과 함께 향후에도 특허청 · 경찰청 · 한국지식재산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와 핫라인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으며, 지식재산 보호도 포함해 공정한 규칙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말해 참가자들도 이에 호응했다.



● 이용바랍니다.

✚ 무료법률상담 <산업재산권제도 기반정비사업(일본특허청)>

모방품 · 복제품 피해, 지재 라이선스나 기술정보 누설 트리블 등 한국에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변호사 · 변리사 등 한국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일본특허청의 지원사업에서 전액 지출됩니다.

✚ 공개상담

상표나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 소박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한국 IPG 사무국으로 보내주십시오. 협력회원(법률 · 특허사무소) 전문가들에게 답변을 의뢰하겠습니다. 회원간 지식 ·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여, 「한국 IPG · Information」이나 한국 IPG 홈페이지에서 <Q&A> 형식으로 공개합니다(상답자는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 모방품에 관한 침해조사비용 보조 <중소기업지적재산권보호대책사업(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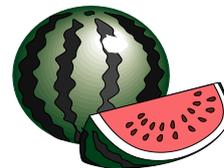
지적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모방품 · 해적판 제조원이나 유통경로 특정, 시장 판매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침해조사비용총액의 2/3(상한 : 300 만 엔)를 조성합니다.

● 한국 IPG 사사키 리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리더 교체)

한국 IPG 리더(SJC 지적재산위원장)를 맡아주셨던 사사키 요시히로(佐々木 慶弘)씨 (YKK 한국)가 한국에서의 임기를 마치고 새 부임지로 이동하셨습니다. 한국 재임 중에는 IPG 발족의 선두에 서서 큰 공헌을 해주셨기에 한국 IPG 가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사사키씨께서는 다음 부임지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사키 씨 후임으로 같은 회사의 엔도 시게카츠(遠藤 重勝)씨가 SJC 지적재산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한국 IPG 리더도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래 내용은 전·사사키 리더가 한국 IPG 에 전하는 격려메시지입니다.



한국 IPG 여러분께



지난달 말 중국 다이렌에 부임했습니다.

재임 중에는 여러분들께 많은 신세를 졌기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한국 IPG 를 JETRO 와 함께 만들자마자 전근을 가게 되어 정말 섭섭합니다만 후임인 엔도씨가 SJC 지적재산위원회 위원장을 이어받아 한국 IPG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나갈 터이니 잘 부탁 드립니다.

저도 여기 중국에서 베이징 IPG 와 상하이 IPG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중국에서 한국IPG가 보다 효율적으로 지적재산 보호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중일 IPG 연계」를 시야에 넣으면서 활동해 나가고자 하오니 잘 부탁 드립니다. 또한 곧 연말이 다가오지만 금년 안(11 월 이후 개최예정)에 제 3 회 한국 IPG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가 부탁 드립니다.

부임해서 아직 10 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디다만 한국과는 또 다르게 지적재산 보호활동이 될 만한 소재들이 길거리에 널려있어 중국에서는 각 회사에 지재보호 담당사원을 상주시키지 않으면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적재산 활동을 통해 여러분과 협력해나갈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립니다.

< 사사키 요시히로 · 전 한국 IPG 리더 >

● 향후 활동

9 월 2~3 일(서울세관), 9~10 일(인천공항세관), 16~17 일(광주본부세관)
/ 세관직원대상 진위판정연수

세관에서 이루어지는 「세관직원대상 진위판정연수」에서는 세관 단속직원에 대해 기업의 담당자가 자사 상품의 진위판정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세관에서의 모방품 단속 효율 향상이 기대됩니다.

한국 IPG 는 제한 일본계 기업이나 일본국내기업이 자사제품에 대해 세관에서 진위판정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한국정부(TIPA : 무역관련지식재산보호협회)에 요청 중입니다. 9 월 분에 대해서는 상기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일본계 기업 배정(4 개사 정도)이 정해지면 한국 IPG 가 참가기업 모집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일본국내에서도 참가가능하며, 9 월 이후로는 12월에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 경제산업성 조사사업 >

한국라이선스세미나

한국의 지적재산 라이선스실무를 총망라한 「한국라이선스매뉴얼」이 발행되어(2010년 3월·제트로 발행 : 특허청위탁사업), 이 매뉴얼을 기초로 한 「한국라이선스세미나」가 도쿄(7월 14일), 오사카(15일)에서 개최되어, 한국에서의 라이선스 유의점 등에 관한 해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제트로가 한국사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트로 서울센터 (조건동 주임)

한국 GDP의 75%를 차지하는 무역관계지만, 리먼쇼크 이후 향후 경기향방은 수출회복에 의한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대내직접투자 실적도 큰 폭의 하락없이 양호하며, 한국정부도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다. 또한 일본제품 인식에 있어서는 종래에는 산업자재나 고급가전 중심의 소비패턴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 인적교류, 소득수준 향상, 웰빙 지향 등의 이유로 라이프스타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강연 : 한양특허법무법인 · 김세원 변리사

「한국라이선스매뉴얼」(2010년 3월 발행)을 알기 쉽게 요약·해설한 내용의 강연이었습니다.

처음에 한국과의 기술이전 현황이나 상대방측 적합성판단 자료에서부터 라이선스 상대인 한국 기업이 어떤 경향으로 일본기업에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라이선스상대 발굴방법이나 접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한 뒤, 한국정부의 기술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라이선스 관련법규로 금년도에 개정된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해, 특히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특허풀이나 기술표준 등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 추가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라이선스 계약 시 유의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유출규제법규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으로의 기술유출사례 등을 소개 하면서 한국의 기술유출관리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때 일본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에서 실무상 포인트로서 한국기업문화의 특징을 재미있는 예를 들어가며 문화를 이해한 상태에서의 계약협상 중요성이나 계약할 때의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해 참가자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시점에서의 한국라이선스 관련법규나 최신정보, 그리고 계약서 작성 포인트 등이 사례 중심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얻었습니다.



※ 「한국라이선스매뉴얼」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무국으로



한국 IP 뉴스

● 한국휴대폰, 특허에서 애플의 장벽을 깨다

「검색 제일인자」구글과 「스마트폰의 신흥강자」애플의 자존심을 건 싸움이 특허권 분쟁으로 확대되었다. 구글은 한국국내기업을 통해 애플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휴대폰관련 특허를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휴대폰제조강국인 한국을 무대로 구글이 애플의 아이폰에 대항하는 안드로이드 연합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6월16일, 구글이 최근 안드로이드 OS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 애플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휴대폰관련 특허를 양도할 것을 요청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구글이 애플의 약점인 관련기술 특허를 모아 애플 대항전선의 선두에 서고자 하는 의사로 보이며, 애플에 대규모 특허공세를 예고했다.

애플이 아이폰에 관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200여 개에 달한다. 아이폰의 대표적인 기능인 터치를 이용한 잠금해제기능이나 멀티태스킹 시스템 등 스마트폰 구동에 필요한 세부기능까지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장벽을 깨는 주요특허를 찾아내는 것이 구글 진영의 최대 과제라고 하겠다. (전자신문 6월17일자)

● 11 번가, 짝퉁의류 단속강화

6월23일,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11번가」와 한국의류산업협회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방지와 조사단속 등 여러 가지 보호활동을 전개해 의류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이번 양해각서의 체결로 인해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위조상품 단속을 유기적으로 실행하고, 한국의류산업협회의 전문변호사자문단을 활용해 오픈마켓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타임즈 6월23일자)

● 삼성전자, 미세공정관련 특허침해로 피소

삼성전자가 6월23일, 미세공정에 관한 기술특허 침해 등으로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당했다. 미국 뉴멕시코대학은 당일 삼성전자와 대만 최대의 반도체회사인 TSMC가 뉴멕시코대학에서 개발한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두 회사를 ITC에 제소했다.

미국에서 특허침해에 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곳으로는 지방법원과 ITC가 있는데, 주로 배상금액 산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법정과는 달리 ITC는 수입금지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소송의 조기해결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기관이 주로 ITC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전자신문 6월24일자)

● 디자인출원은 4 차원으로 진화 중

한국특허청은 1월에 세계 최초로 3D 디자인출원시스템을 개통시켰는데, 더 나아가 내년도 개통을 목표로 플래쉬 파일 등을 이용한 동적 디자인의 출원·심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동적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가 물품이 가진 기능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물품이 움직이는 상태를 표현할 수 없으면 전체 디자인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물품 디자인 자체가ダイナ믹하게 변화하는 「동작하는 완구, 움직이는 아이콘」 등이 있다. (한국특허청 HP 6월4일자)

● 네이버, 다음이 「공유콘텐츠」 검색을 곧 도입!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서 CCL(Creative Commons License)검색을 곧 도입할 예정이다. CCL이란 콘텐츠 제작자가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사용을 허락하는 인증이다. 비영리단체인 CC가 이 인증을 만든 후 그를 지지하는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CCL을 붙이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에 도입되는 서비스에서는 CCL콘텐츠를 검색해 복사만 가능한지, 복사해서 자유롭게 편집이 가능한지 등, 콘텐츠 이용수준에 따른 검색도 가능하다. 인터넷 이용자는 이 서비스로 찾아낸 사진, 영상, 음악 등을 이용해 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동호회 등 여러 사이버 공간을 꾸밀 수 있게 된다. (전자신문 6월29일자)

※ 자세한 기사, 그 밖의 뉴스에 대해서는 『한국지적재산뉴스』를 참조바랍니다.

URL : http://jetro-ipr.or.kr/newsLetter_list.asp

 **최근의 판례**

●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된 사례
(대법원판결 / 사건번호 : 2009 다 82244)

【개 요】 (영업비밀 등의 보호)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원고회사를 퇴직한 후 2 년 이내에는 원고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거나 직접 · 간접적인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으나, 피고는 원고회사를 퇴직한 직후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계무역회사를 설립 · 운영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행위에 대해 경업금지약정위반 또는 부정경쟁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본건의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1)기술상 · 경영상 정보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2)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경업제한기간 · 지역 및 대상직종, (4)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유무, (5)근로자의 퇴직경위, (6)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경업금지약정이 피고의 상기와 같은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건의 경업금지약정은 한국 민법 제 103 조에서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근로자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려는 사용자로서는 경업금지기간을 합리적으로 한정해 적절한 대가도 지급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지식 또는 정보를 미리 특정해놓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사용자만이 갖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이것을 제삼자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근로자와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 신용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상표권침해행위를 사전에 일반적 · 포괄적으로 방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침해행위를 사후에 개별적 · 구체적으로 방지해야 하는 의무는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 2009 라 1941)

【개 요】 (인터넷상에서의 모방품 유통방지)

상표(「adidas」 또는 「아디다스」) 권리자인 채권자는 「오픈마켓」 형태의 쇼핑몰 운영자인 채무자에 대해 ①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상품 중 위조상품을 목록화해서 판매중단조치와 판매자등록계정 삭제를 요청하고, 또한 ②적극적으로 위조상품에 관한 판매정보를 검색 · 삭제해 접속을 차단하며 향후 위조상품에 관한 판매정보가 게시되거나 검색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지속하도록 요청했으나 채무자는 ②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위조상품 판매 등 오픈마켓에서 일어나는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해 오픈마켓의 운영자로서는 이를 사전에 일반적, 포괄적으로 방지해야 할 법률상·계약상·조리상 적극적인 작위의무는 없다고 했다. 한편, 상표권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위조상품 삭제 및 판매금지조치를 요구당하거나 상표권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할 지라도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 외관상 명확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자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판매자가 더 이상은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에 상고 중.

※ 자세한 내용, 기타 판결에 대해서는 판례데이터베이스(http://jetro-ipr.or.kr/case_list.asp)를 참조바랍니다.

부산에서 역대 최대규모 불법음반(약 42 만점) 적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5 월 27 일(목) 부산 소재 불법음반물 제작업체를 급습해 역대 최대 수량인 420,567 점을 적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했으며, 현재 제작업자와 대형도매상 2 명을 구속기소 하고 재료공급업자 1 명을 불구속기소 하였다.

과거에 비해 음반시장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불법 음반제작물 제작공장이 적발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지난해 저작권보호센터의 오프라인 전체 단속건수와 맞먹는 42 만점이상의 불법복제물을 한 지역에서 적발한 사례도 매우 드문 경우이다.

(※저작권보호센터 2009 년 오프라인 전체 단속실적: 429,368 점)

서훈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이사장은“불법복제물이 시장에 유통되기에 앞서 대규모 불법·제작업체를 적발함으로써 불법복제물을 근원적으로 예방했다는 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보호센터는 1 년 전부터 불법 노점을 역추적해 고속도로 휴게소 노점 등에 불법음반물을 유통시킨 업자를 적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제작업자는 주택가 3 층 건물을 개조한 불법음반 제작공장에서 CD 라이터기 104 기, 오디오 10 대, 포장기계 16 대, 오디오 믹서기 3 대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최신곡을 포함한 1 만 7,000 여곡을 대규모로 복제, 중간 도매상을 통해 전국으로 불법음반물을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제작업자는 지난 4 년간 불법음반(CD) 약 110 만장을 유통시켜 약 15 억 7,000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왔으며, 유통된 불법음반(CD)을 정품가로 환산할 경우 음반시장에 약 110 억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추정된다.

합동단속반은 적발된 불법복제물을 전량 수거·폐기하고, 적발된 업자들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을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이번 단속을 통하여 오프라인 상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저작권 보호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 년 연속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쾌거를 이루어낸 만큼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 / 2010.6.16)

< 해당업체 내부 >



< 불법복제기기 >



가장 빠른 한국특허 취득법은?

FILE No ; 22

한·일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이름 그대로 한국에서의 특허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수단입니다. 한국특허청에 따르면 일반적인 심사기간은 평균 15.4 개월(최초 통지까지의 기간. 특허결정까지는 평균 22.2 개월)인 것에 비해 PPH 를 신청하면 2.6 개월(PPH 신청으로부터의 기간. 특허결정까지는 5.3 개월)로 대폭 단축됩니다. 스피드뿐만이 아니다. 특허로 등록되는 비율도 전체평균이 58.2%인 것에 비해 PPH 를 신청한 안건에서는 87.0%에 달하고 있다. 이때문인지 일본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작년도 PPH 신청은 전년도 대비 2 배라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글로벌화와 함께 특허전략이 경영 정책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기업에서는 많은 국가에 특허출원을 전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시장을 바라보는 일본기업의 최근 출원전략은 모방품 대책이라기보다 첨단기술의 경쟁 대상국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허권을 효율적으로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가 PPH입니다. PPH란 예로서 일본에서 심사를 거쳐 「특허가능」 판단을 획득한 특허출원에 대해 한국에서의 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신청하는 절차입니다.(역으로도 가능)

한국의 특허심사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스피드도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빠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서둘러서 심사청구를 하여 혹시 바람직스럽지 못한 심사결과를 받게 되면 일본 등 다른 나라 심사에 영향을 끼치게 될수도 있게 됩니다. 특허절차의 차이, 언어적인 면에서의 의사소통의 정확성, 심사관과의 면담 편리성 등을 생각하더라도 일본기업이라면 한국보다는 일본 국내에서 먼저 심사를 받아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본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일본 심사결과를 존중하는 한일 PPH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한국에서도 유리한 입장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에 대한 대책

한국특허청은 통계면으로 다른 주요국의 특허청에 비해 특허율이 높기 때문에(66.3%) 심사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심사가 엄격하다고 느껴집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 제공」이라는 슬로건 하에 심사관으로 박사학위 취득자를 다수 채용한 결과, 특허성 판단레벨이 박사레벨까지 높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들려올 정도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심사과정에서 기업측은 권리를 최소화시키더라도 특허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특허율이 높아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에서도 권리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과 아울러 중요한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1 건의 특허출원에 많은 내용의 발명을 포함시키기 보다는 복수의 출원으로 나누어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요기술과 그 주변에 복수의 특허권을포석하여 경쟁사가 기술적인 우회를 통해 빠져나갈 길을 미리 차단시켜 두는 수법도 필요합니다.

1 건의 특허출원에 복수의 발명(청구항)을 포함하여 출원된 경우, 거절(특허불가)할 발명과 특허 가능한 발명은 심사 과정에서 구별하여 통지되기 때문에 이때 출원전체가 거절 결정되지 않도록 특허 가능한 일부 발명만을 남기는 보 정을 활용하여 특허취득의 기회를 갖는 것이 유리합니다.

억울한 것은 거절하려는 극히 일부의 발명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반복되지 않아서 특허 받을수 있는 발명까지도 전체가 거절되어 회복이 불가능 해지는 것입니다.

심사에서 거절하려는 발명이 출원한 기업에게 있어 중요하고, 이에 의견을 제출할 의향이 있다면, 출원을 분할하여 다른 출원절차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에서 거절결정된 후에는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급심 일수록 장벽이 높은 점이 있습니다. 심판청구 시에도 구제수단으로서 분할 출원을 하여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허청의 ‘고객감동’경영

한국의 특허제도는 오래 전에는 일본의 제도와 유사 하였지만 한국특허청은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 제도의 개혁을 이루어 왔습니다.

작년 7월에는 「재심사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심사결정에 대해 출원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2007년 제도 개정에서는 출원서류 가운데 「특허청구 범위」작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추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특허청은 각종 설문조사를 통하여 고객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제도 개정에 반영시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을 넘어 「고객감동」이라는 슬로건 하에서의 노력은, 한국특허청이 한국대기업과 업무 협력계약도 체결함으로써 기업들의 경영방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에서도 실무상 발명보호에 있어 부적절한 제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과감한 개선을 피하는 한편, 현행 제도나 실무에 맞는 특허전략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변화가는 특허제도를 항상 주시하면서 특허전략도 변화를 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해설자>

최달룡국제특허법률사무소 최달룡 변리사
1945년 출생. 1974년 한양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후, 특허사무소에서 근무. 1982년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1999년에 사무소 개설.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출원만을 취급. 한국 지재관련법령의 일본어번역을 홈페이지(www.choipat.com)에 게재.
현재,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감수:JETRO 서울센터 에노모토 요시타카(榎本吉孝))

<< The Daily NNA 【한국판】 지면으로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 연재 >>

